

추가약정서

(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용)

유니온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_____ (인)
주 소 : _____

채무자는 유니온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
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(이하 ‘규제지역’) 소재 시가
9억원 초과 주택(이하 ‘고가주택’이라고 합니다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^{주1)}의 세대주
또는 세대원인 채무자(또는 그 배우자)가 해당 고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
하여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개월 이내에 해당 고
가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고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
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주1) “세대”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
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
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제 2조 (임차보증금 반환 대상 고가주택 등)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
하고 있는 고가주택 또는 처분대상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은 다음과 같
습니다.

구분	소유자	주소
고가주택		
처분대상 주택*		

*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한 주택 등

제 3조 (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) 2주택세대는 처분대상 주택에 대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
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

제 4조 (거주 의무)

- ①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제 2조에 명시된 고가주택에
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.
- 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향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, 채무자는 전
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제 5조 (주택 등의 추가 구입 금지의무 등)

-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 2조에 명시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^{주2)}하지 않습니다.

주2) 매매, 증여,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.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, 이하 같음

- ② 채무자는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 6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제 2조에 명시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

2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보유^{주3)}하고 있는 경우

주3)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

3. 채무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
제 7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4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5)}이 제한됩니다.

주4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5)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5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전까지 제 2조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

2. 채무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
3. 제 4조에 명시된 전입 의무의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